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1.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 혹한기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12월~2월)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예정으로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장(근로개선지도팀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장(근로개선지도팀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근로개선지도팀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근로개선지도팀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건설산재지도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산재예방지도팀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

전문위원 **류채은** 행정사무관 **이덕원** 건설산재예방정 전결 2024. 11. 19.
책과장 **이경제**

협조자

시행 건설산재예방정책과-3575 (2024. 11. 19.) 접수 건설산재지도과-4813 (2024. 11. 19.)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8942 팩스번호 044-862-8075 / csilver55@korea.kr / 대국민 공개